

# 부 산 가 정 법 원

## 제 1 가 사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4드합270(본소) 이혼등<br>2014드합200247(반소) 이혼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
| 원고(반소피고) | 이AA ( -1 )<br><br>부산<br><br>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피고(반소원고) | 이BB ( -2 )<br><br>부산<br><br>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변 론 종 결  | 2015. 5. 14.                                          |
| 판 결 선 고  | 2015. 6. 18.                                          |

###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 1)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 7.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고, 이 CC은 원고의 아버지, 서DD은 피고의 어머니, 이EE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 2) 혼인파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경 전문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당시 \*\* \*\*\*\* 안과 레지던트였고, 피고는 \*\*\*\*\* 단원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가 혼인하면서 원고 부모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

고 부모는 원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결혼식 비용, 신혼살림 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며, 원·피고의 신혼생활을 위하여 원·피고 공동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에 부산 \*\*\*\* \*\*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결혼 준비과정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예단비 등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다) 원고는 결혼 당시 약 1억 3,0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고, 원고의 월급 또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에 더하여 해외여행, 차량구입, 취미활동 등으로 연 1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과도한 소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피고 부모의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출을 얻어 소비를 하는 등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면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경 "술을 먹고 탄 남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를 비밀로 하였습니다. 연락을 한 달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며 마음 속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주고, 2013. 2. 16.경 "6개월 안에 20kg 이상 감량, 서로에게 가식 없이 정직하게 행동하기(휴대폰 잠금 없기), 양쪽 부모님에게 잘하기(오빠 생각에 동의하기), 아기 만들기에 충실하여 나 자신에 자아를 찾는다(임신 전까지 오락과 PC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여), 다시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다른 남자와의 전화 통화, 문자, 메일, 즉석만남)." 등의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1.경 예정인 전문의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2012. 5.경부터 원룸을 구하여 피고와 따로 생활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7.경 피고가 키우는 애완견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걸레를 던지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여 이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2015 사건).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4. 1. 22.경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원고 부모에게 김치 냉장고를 사준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이후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4고정934 사건).

사)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 및 임신, 다이어트, 양가 부모님의 태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 3) 관련 사건의 경과

가) 이EE는 2014. 2. 18.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4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sup>1)</sup>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이EE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21. 확정되었다.

나) 서DD은 2014. 3. 11. 원고와 이CC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3688호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서DD은 2013. 2. 18.부터 2013. 3. 22.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억 1,930만 원을 대여하고, 이CC에게 2011. 6. 2.경 1억 원을 대여하는 한편, 2012. 3. 30. 벤츠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여금과 차량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14.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생활지원금 또는 증여금으로 보이고, 이CC에게 지급한 위 돈과 차량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서D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DD이 부산고등법원 2015나700호로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1) 당초 이EE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이EE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대여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9.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2207호로 2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의함에 따라 같은 법원 2014가소26633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2014.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자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4나18688호로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 7, 9, 11, 22, 23, 28, 34, 36, 37, 77호증, 을 제1 내지 12, 19, 36, 37, 51, 5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 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본소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부부관계 거부, 사치 및 과소비, 난임 및 그에 대한 거짓말, 과격한 언어폭력 및 폭행, 피고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사치와 낭비벽, 폭언과 폭행, 성기능장애와 의처증, 도박, 원고 부모의 피고에 대한 지나친 금전요구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위를 하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나, 원고 역시 가계의 지출

을 통제하지 않고 이를 방관하거나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 등으로 가계채무를 늘렸던 점, 피고를 이해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며, 쌍방 모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사랑과 배려로 감싸기 보다는 상대방과 그 가족들을 힐난하고 나아가 폭언·폭행으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혼인 전인 2008. 1.경 \*\*\*시 \*\*동 \*\*\*-\*\* 지상 2층 건물 중 제\*\*\*호를 8,000만 원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은행에 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 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은행에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2) 원고는 혼인 당시 \*\*\*\*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2년경까지는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2013년경부터는 월 평균 약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피고는 혼인 후 \*\*\*\*\*를 그만두고 가사를 전담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동안 카드대금채무가 증가하자 2012. 1. 5.경 \*\*은행 에서 8,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원고의 위 \*\*은행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중 잔액인 4,95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약 3,350만 원은 원, 피고의 생활비, 카드대금, 카드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카드대금, 카드론 채무가 남아 있자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 혼인 당시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 회원권을 3,300만 원에 매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4) 서DD은 원·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자 2013. 2. 18.부터 2013. 3. 22. 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에게 합계 1억 1,930만 원을 보내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이 돈을 위 \*\*은행 대출금 채무 8,300만 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5) 이후에도 대출금 이자 미지급, 카드대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주) 등에서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2013. 7. 2. 원고 명의의 \*\*은행의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 5,000만 원 증액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위 \*\*\*\*(주) 등에 대한 채무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6) 2013. 11.경 원고가 혼인 때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인피니티 차량을 3,500만 원에 매도하여 \*\*\*\*(주) 등에 나머지 채무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현재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원고 명의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33, 36 내지 40, 51, 52, 68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8, 19호증, 을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혼인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합계 670만 원 상당의 시계와 양복이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판결 참조), 위 예물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고는 위 2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서DD이 원고 또는 피고에게 보내준 돈도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 가부

1)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

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피고는 아무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고의 채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킬지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이 될 것인데, 원·피고는 피고 부모가 마련해 준 신혼집에서 생활한 점, 피고 부모는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매달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돈과 신혼집 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었고, 원·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1억 1,930만 원을 보내주기도 한 점, 원고는 혼인 전부터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반면, 원·피고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점, 원고는 전문의로서 현재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반면, 피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을 피고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채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2)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피고의 반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 재판장 | 판사 | 문준섭 |
|-----|----|-----|

|  |    |     |
|--|----|-----|
|  | 판사 | 김미진 |
|--|----|-----|

|  |    |     |
|--|----|-----|
|  | 판사 | 박숙희 |
|--|----|-----|